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만에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신 해양수산부가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「항만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대행 범위를 구체화하고,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항만개발사업의 대행(안 제23조 개정)

지방관리항만에서 군함, 경찰용 선박,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및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,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)”을 “(항만개발사업의 대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“군함,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.

1. 군함
2. 경찰용 선박
3.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분과심의회회의 구분 및 기능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심의회를 둔다.	제7조(분과심의회회의 구분 및 기능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항만분과심의회: 법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6호부터 제8호까지, 제9호(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및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중앙심의회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) 및 제10호(항만의 개발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사항 심의	1. ----- ----- -----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,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----- ----- ----- -----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(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) <신설>	제23조(항만개발사업의 대행)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“군함,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.
	1. 군함

(생 략)	<u>2. 경찰용 선박</u> <u>3.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</u> <u>②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920